

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. 3. 29 선고 2022가단5305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순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선근

변 론 종 결 2023. 3. 8.

판 결 선 고 2023. 3. 2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91,6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5. 20.부터 2023. 3. 29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92,666,6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

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, 피고 및 C은 별지 목록 기재 어업권(이하 ‘이 사건 어업권’이라 한다)을 각 1/3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, 피고가 2010. 7. 26. C의 위 지분을 양수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 1/3 지분, 피고 2/3 지분의 비율로 위 어업권을 공유하고 있다.

나. 원고와 피고는 2015. 6. 8. 서산시로부터 이 사건 어업권의 존속기간을 2025. 6. 30.까지로 연장하는 연장허가를 받았다.

다. 피고는 2016. 1.부터 2021. 12.까지 이 사건 어업권에 기초하여 형성된 양식장(이하 ‘이 사건 양식장’이라 한다)을 임대하여 2억7,800만 원의 임료 수익을 얻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, 18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와 피고는 2015. 6. 8. 이 사건 어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면서, 그때로부터 2021. 12.말경까지 6년간 피고가 이 사건 양식장을 운영하고 2022. 1.부터 2024. 12.말까지 3년간 원고가 이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2.경 위 양식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원고의 운영권을 부인하고 있다. 이에 원고는 위 약정을 해제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수령한 임료의 1/3에 해당하는 92,666,667원의 배상을 구한다.

나. 판단

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양식장을 위와 같이 윤번제로 운영하기로

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

가. 당사자들의 주장

(1) 원고의 주장

피고는 2016. 1.부터 2021. 12.까지 지분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양식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2억7,8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으므로, 위 수익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인 92,666,667원(= 2억7,800만 원 × 원고 지분 1/3, 원 미만 반올림)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(2) 피고의 주장

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식장 중 별지 양식장 도면 표시 1구역을 원고가, 2 내지 4구역을 피고가 각 구분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, 피고는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2 내지 4구역만 사용수익하였을 뿐 원고가 소유하는 1 구역을 이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취한바 없다.

나. 판단

(1)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양식장을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오히려, 갑 제4 내지 9, 17,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, 즉, 원고는 2015.경 이 사건 어업권 연장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위 양식장을 윤번제로 운영할지, 공동운영할지 협의해달라고 요청한 사실, 피고도 2016. 10. 25. 원고에게 보낸 통고서에 위 어업권은 토지와 달리 측량에 의하여 구획된 면적이 없으므로 그 이용방법을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약정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한 사실을 종합해보면, 원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.

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어업권의 공유자로서 위 양식장 전체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고, 위 양식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

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몫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(2) 이에 대하여 피고는,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양식장을 관리함으로써 월 100만 원 상당의 관리비를 절약하였고 제방 공사 등 이 사건 양식장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1,46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, 위 비용에 해당하는 금원은 피고의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갑 제14호증, 을 제2 내지 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가 2015.경부터 2021.경까지 이 사건 양식장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1,220만 원을 지출한 사실, 원고가 피고에게 유지 보수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,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지출한 비용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1,066,667(=1,220만 원 × 원고의 지분 비율 1/3 - 원고가 지급한 300만 원, 원 미만 반올림)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, 위 금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액에서 공제한다.

다. 소결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식장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91,600,000원(= 92,666,667원 - 1,066,667원)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2. 5. 20.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. 3. 29.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수정

별지